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03. 0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 2. 1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 2. 22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0. 3. 2)

상정, 심사

제15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0. 3.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이 종 열 치수방재과장

가. 제안이유

창녕 ‘화왕산 억새꽃축제’ 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 주관 지역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사고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실무위원회에서 “구 주관 축제·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안 제9조제5항)
- 2) “제5항 단서에 따른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9조제6항)
- 3)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안 전반)
 - (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로 개정
 - (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으로
 -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 로
 - (라)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로
 - (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종합상황실”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종합상황실” 로
 - (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지문단” 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지문단” 으로 정비하는 등 기타 법률순화 용어로 변경

3. 검토보고 (신승관 전문위원)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 축제나 행사시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였으나 축제나 행사시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예방에 미흡하였고, 「공연법」에서 공연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공연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 주관 지역축제·행사 등의 안전관리계획 및 공연법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하며,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제명 등 각종 용어를 법제처에서 기준을 정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문구를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